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68 발의연월일: 2021. 6. 29.

발 의 자: 강훈식 · 김윤덕 · 홍정민

양기대 • 이용빈 • 김교흥

김병기 · 장철민 · 홍성국

기동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 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자율적인 책임 아래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하여, 청소년의 행복추 구권과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청소년들이 타인의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효과성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자율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

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 나.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 전 6시까지 친권자등의 요청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에게 시 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친권자등이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친권자등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요청의 철회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7호의2를 제7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친권자등의 요청 없이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제5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	
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	
는 아니 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친권자등이</u>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요청한 경
	<u>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친권자
	등의 인터넷게임 제공 요청 및
	요청의 철회에 관한 방법・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	제45조(시정명령) ①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	
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u>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

7의2. (생략)

- 8. (생략)
- ② (생략)
-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9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4. (생략)
 - 5. 제26조를 위반하여 심야시간 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 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자
 - 6. ~ 9. (생략)

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친 권자등의 요청 없이 인터넷 게임을 제공한 자

7의3. (현행 제7호의2와 같음)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6. ~ 9. (현행과 같음)